



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

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

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건물 16층 (04518) / 전화 (02)2670-9209~10 / 전송 (02)2670-9213 / E-mail : election@kctu.org



문서번호 : 민주선거 1121 - 114호

시행일자 : 2020. 11. 23.

수 신 : 가맹산하조직 위원장(본부장)

참 조 : 가맹산하조직 사무처장

제 목 : 현장투표소 참관 방침 건

백만의 참여, 함께하는 민주노총!

1.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67조(현장투표 참관)에 의거 각 현장투표소마다 후보자별로 추천한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습니다. 단, 67조2(참관이 제한되는 현장투표소에 대한 처리)에 의거, 참관이 제한되는 객관적 이유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하면 참관이 제한되는 투표소로 지정해 참관이 제한됐다는 이유로 투표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2. 이와 관련, 민주노총 2020-10차 중앙선거위 회의(11월 18일) 의결을 통해 아래와 같이 현장투표소 참관 방침을 정하여 통지합니다.

- 아 래 -

현장투표소 참관 방침

- 1) 코로나19 확산은 당해 사업장 조합원 등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이의 외부 참관이 제한되는 객관적 이유이므로, 전국 모든 현장투표소의 외부 참관을 제한함.
- 2) 민주노총 중앙 임원 후보 및 지역본부 임원 후보는 당해 사업장 조합원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이로 투표소별 1명씩의 참관인을 정하기를 협조요청하며, 전국의 모든 현장선거위원회들로 하여금 이를 사전인지할 수 있도록 가맹산하조직에 조치 요망
- 3) 외부 참관이 제한됐다는 이유로 투표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엄교수

